

부속서 8-다 전문직 서비스

1. 각 당사자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전문직 자격, 면허 또는 등록의 인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대화를 수립하는 데 상호 관심 있는 전문직 서비스를 확인하고자 자신의 영역의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2. 각 당사자는 전문직 자격을 인정하고, 면허 또는 등록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련 기관이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관련 기관과 대화를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련 기관이 상호 관심 있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자격, 면허 또는 등록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관련 기관과 모든 형태의 약정을 교섭하도록 장려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련 기관이 전문직 자격, 면허 및 등록의 인정에 대한 협정을 개발함에 있어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 있는 협정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5.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추가 필기 시험 없이,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본국 면허 또는 공인된 전문직 기구 회원 자격에 근거하여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임시 또는 프로젝트별 면허나 등록제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다. 또는

나. 적절한 경우, 그러한 면허 또는 등록을 허용한다.

임시 또는 제한된 면허 제도는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가 적용 가능한 현지 면허 요건을 충족하면 그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가 현지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언급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련 기관이 상호 수용된 분야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전문직 표준 및 기준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장려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교육

나. 시험

다. 경험

라. 행동 및 윤리

마.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

바. 종사 범위

사. 현지 지식, 그리고

아. 소비자 보호

7.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경우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8. 각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경우, 관련 직종을 위한 공동의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할 때 국제적인 틀을 참고하도록 자신의 관련 기관을 장려한다.

9. 당사자들은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를 통하여 이 부속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